

	자체평가 규정	문서번호	MSU-
		제정일자	2010. 5. 10.
		최종개정일자	2012. 4. 9.
		담당부서	기획산학처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에 따라 목포과학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교육, 연구, 조직, 운영, 시설, 설비 등 대학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자체 점검·평가하고 평가의 결과를 공시하며, 대학발전 계획과 전략수립 등에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원칙) 평가는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제3조(평가영역) 평가영역은 대학정보공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 연구, 조직, 운영, 시설, 설비 등 학교 전반적인 영역과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영역으로 한다.

제4조(평가시기) 평가는 2년에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기 구

제5조(평가 주무부서) ① 대학자체평가의 총괄적인 업무지원을 위하여 주무 부서를 기획산학처로 하며, 기획산학처에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평가팀을 둔다.

② 기획평가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 기본방향 및 전략수립
2. 자체평가 평가지표 선정
3. 자체평가 대상범위 선정
4. 자체평가의 총괄 평가 및 조정

제6조(자체평가 심의위원회) ① 자체평가의 업무수행을 위해 수립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평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체평가 기본방향 및 전략수립
2. 자체평가 평가지표 선정
3. 자체평가 대상범위 선정

② 심의위원회는 6인 이내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기획산학처장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7조(자체평가 실무추진위원회) ① 자체평가의 실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평가 실무추진위원회를 둔다.

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추진위원회는 업무추진에 필요한 교직원 10인 이내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기획산학처장으로 한다.

③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 자료수집 및 검증
2. 자체평가 및 보고서 작성
3. 평가결과의 공시

제3장 평가방법 및 절차

제8조(평가계획 수립) 평가주무부서는 평가년도 자체평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평가계획을 각 부서 및 각 학과에 통보한다.

제9조(자료의 제출) 각 부서 및 학과는 평가주무부서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평가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실시) ①평가주무부서에서는 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한다.

②추진위원회는 평가지표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각 학과 및 해당 부서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있다.

④기획평가팀은 자체평가를 총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 보고) 평가주무부서는 추진위원회에서 작성한 평가 자료를 확인한 후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받는다.

제12조(평가결과 활용) 평가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되며, 대학발전계획에 활용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